

開 會 辭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건설부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 및 내빈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본협회가 주최하는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가 우리나라 건축업무의 일선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있는 건축사들의 단체이자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관련 공익법인으로서
건축사와 건설업자 그리고 건축주인 국민들의 건축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행 각종 건축관계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협회의 부설기구로
건축법령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으며,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법령과 제도가 관주도의 행정위주로 조장 지원되어 왔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시대적 관료중심의 행정제도와 그 운영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합리와 민주의 풍토속에 참다운 건축문화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30일 양일간 전국의 회원과 건축관계 인사 3천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다짐을 채택함으로써 국민편익위주의 민주행정을 위한
건축관계법령제도의 개선에 앞장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날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추구하는 주거생활향상에 보조를 맞추어
그에 걸맞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건축관계법령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우리 건축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택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의 정책의지로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가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뒷받침 되어야만 국민의 편익은 물론 정부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대형건축물이 증가하고 다양화해가는 추세이고 보면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뒷받침이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정부조직상의 전문 건축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본협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건축 3단체인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명의로 건축청
신설을 수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 입안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와같은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건축행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건축관계법령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연구소
운영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소의 운영을 통하여 법과 제도는 이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위해
있다는 순리에 따라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만성적 행정규제와 통제를 지양하고 국민편익위주의 개발행정체제로 개척해
나감으로써 건축문화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고 인류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하여 국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공사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6월 15일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建設部長官 激勵辭

오늘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건설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이 토론회 행사가 건축사협회 부설 건축법령연구소 발족에 따라 그 기념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건축법령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현실에 알맞게 개선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건축사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행정은 건설 건축행정분야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분야로서 특히 주민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국토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 전반에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건축행정분야의 과제도 종래의 행정편의위주의 법령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민편의위주의 민주행정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건축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에서 건축계에서 해당분야 권위자인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주요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개정문제, 기구보강문제, 주차장기준개선문제와 아울러 200만호주택건설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격의없는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는 앞으로 건축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토론회와 연구소의 발족이 우리 건축계의 도약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격려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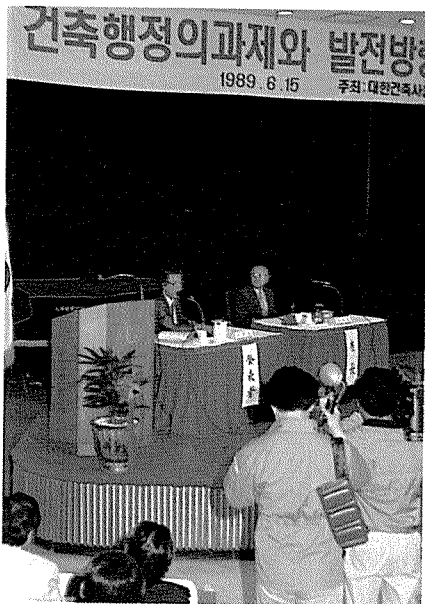
1989년 6월 15

건설부장관 朴 昇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령연구소 발족을 기념하여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송기덕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주택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내빈과 학계, 업계, 관계공무원 및 관련인사가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 토론 객석의 질문 순으로 시종 진지한 가운데 연단과 객석이 혼연일체가 되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과제 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선방향

- 발표자/안영배(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원장)
- 좌 장/한정섭(단국대 교수)
- 토론자/정명순(한양대 교수) 김동욱(건설부 도시시설계획과장) 안중관(서울시 교통기획과장) 오웅석(본 협회 전 회장)

도시인구의 과밀집중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는 점차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전문가는 물론 도시계획가와 건축사, 그리고 사회학자까지도 참여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문제와 연관이 큰 주차정책에 관해서는 건축사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차문제에 관해서 주차장의 증설이 도심 승용차의 과다한 도심진입을 유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상당한 량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자주나오는 것을 볼때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시미관을 위해 Open Space (녹지공간)가 필요했다면 적절한 Open Space를 확보하도록 법이나 기준을 개정했어야 했고, 또 용적율이 너무 높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 조정을 개정했어야지

용적을 때문에 지상주차장 문제가 논의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차면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에 따른 조정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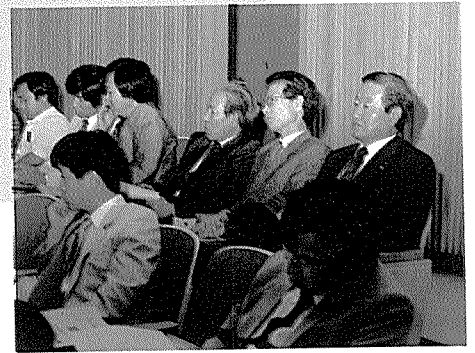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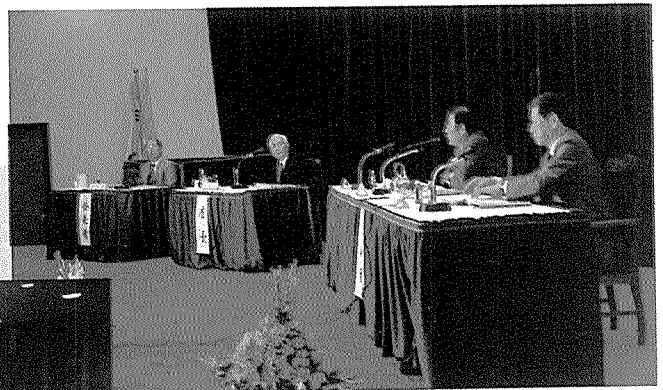
도심과 도심외곽은 구별되어야 하며 도심지에서도 현 상황에서 주차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지역과 극히 부족한 지역을 선별해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도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심밖보다는 축소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도심의 주차공간이 현재는 부족하다 하여 현행처럼 과다하게 주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다.

제2과제 현행 건축법령과 제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이종엽(본 협회 이사)
- 좌 장/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 토론자/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성일(부산시 건축과장) 이영희(본 협회 서울시지부 회장) 허종오(본 협회 서울시지부 회원)

건축행정 질서에 있어서 혼란의 근원은 법령의 확실성과 구체화되지 않은데 있겠지만 법률로서 정한 정부의 권한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그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 야기되는 혼란과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지침이 그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제때에 뒷받침 하지 못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성과 그 분야에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독단적 임의 규제를 명령하거나 지시에 의하여 규제하고 국민을 통제하는데서 혼란이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건축행정 공무원들은 법령을 적용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혼란 때문에 무사안일주의로 집착하거나 국민에게 그법을 남용하고 합리화시킬 경우와 행정위주의 유권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위임한 권한으로는 조례와 규제(지침)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그 실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방향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강제>의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강제>된 질서는 필연코 저항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 국가와 사회는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기본방향은 법령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 법으로 다스리게 하며 적용과 운용에 있어서도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공평무사하다는 의미이며, 형평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은 국민 전체의 것이어야 하고 개인이나 특정인 또는 소수인을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3차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방향

- 발표자/이필원(건설부 건축과장)
- 좌 장/이문보(동국대 교수)
- 토론자/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이병담(현대산업개발(주) 전무이사)
정인환(주공주택연구소 연구개발실장)
권태정(본 협회 서울시지부 간사)
이정규(청년건축인협의회 회장)

건축법령의 주요개선과제의 하나로 2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표·토론되었고 설문조사(건설부, 건축사협회 공동설문조사, 청년건축인협의회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됐는데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을 소개한다.

가. 건축법사항
건축법의 복잡한 정도는 과반수 정도가(46.0~59.6%) 매우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이해가 곤란하다였다. 따라서 법령의 체계와 조문의 평이화가 시급하다.
건축허가절차의 복잡한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거나 까다롭다는 편이(66.8~90%)였고, 그 이유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나 내부지침에 우선 통제가 많다는 것과 건축심의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건축공무원의 법령이해정도는 건축사들 응답자의 반이 모르는 사항이 많으며 그 이유는 건축법령의 빈번한 개정과 비전문공자의 배치 때문이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건축주의 준법정신 결여에 40% 이상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방지방법은 건축법령의 합리적 개선, 대민홍보,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의 순으로 두고있다.

나. 건축사법 사항

건축사사무소 등록방법 즉, 단독 및 종합구분 등록제가 건축물 질적향상등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건축사가 41%나 되므로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절차간소화 및 국민편의에 도움이 크게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건축사 행정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직업별에 따라 크게 달라서 건축사는 가혹하다는 응답이 53.7%였으나 공무원은 7.9%에 불과하고, 67.1%가 적절하거나 약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현격한 차를 보이고 있다.

다. 건축행정 일반

건축행정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순위를 건축사는 법령유지를 위한 법령교육강화, 부조리제거, 대민홍보, 전문인력증원, 행정조직보강인 반면 공무원은 그 순위가 거꾸로로 시각차가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 및 일반참가자들의 열기는 매우 높았다. 카메라, 녹음기 등 장비까지 동원, 토론회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도 많았다

현저하게 달랐다. 행정내부의 실정에 밝은 공무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제4과제 **건축행정 전담기구의 보강과 운영방향**

- 발표자/박돈서(아주대 교수)
- 좌 장/여홍구(한양대 교수)
- 토론자/이필원(건설부 건축과장)
김영창(대구시 건축과장)
이종민(서울시 한국주택사업협회 사무국장)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건축 투자는 GNP의 약 9%를 차지하며 해마다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도시·주택·산업·과학기술·재정금융·사회·문화 등 실로 다양한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고는 건설부 주택국 산하의 1개과(건축과)뿐이니, 이는 건설부가 발족된 1960년대의 약 1백배에 달하는 건축경제규모로 팽창한 오늘날 너무나도 빈약한 기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부서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 방대한 건축업무를 건설관리국 밑의 1개과(건축지도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 불합리한 것은 각 시·도에는 거의 주택과만 있을 뿐 건축업무는 주택행정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앙정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연성이 대두되는 것이며, 아울러 하루가 새롭게 발전하는 건축자재·건축공법등 기술혁신의 국제적 경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건설부내의 주택국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므로 주택부, 아니면 최소한 주택청이라도 신설하여 장단기적인 종합정책의 수립과 타 연관부서와의 협조 조정 정책의 시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과제 **200만호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발표자/장동찬(본 협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좌 장/김희춘(서울대 명예교수)
- 토론자/조우현(건설부 주택정책과장)
이유택(서울시 주택기획 과장)
윤진우(본 협회 경기도지부 회원)

경제성장과 건축물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1988년의 주택보급율은 1975년의 74.4%에 비해 5%가 감소한 69.4%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보급율은 92년까지 2백만호를 건설하여도 72.7%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전국에는 4백만의 무주택가구가 있고 이중 2백50만은 단칸방에, 그중 1백만은 생활 보호대상 가구이다.

이들 대상이야 말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주거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정부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은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비롯한 택지, 자금, 인력,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규제와, 절차의 복잡성등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신규주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량주택 밀집지역(일명 달동네)에도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립주택 밑에 상가허용 △전용주거지역에 고급빌라등 주거용 건물 확대 △아파트의 근공간 폭과 높이제한 완화 △시장지역에 복합건물 활용 △근린생활시설의 규모중 5백㎡, 1천㎡등 소규모로만 제한하던 것을 지역개발에 따라 확대조정 △주택불량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등 기본시설 이외의 건물규제 대폭완화, 개발촉진 도모 △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지역·지구 지정 재검토, 일반녹지지역을 일부주거지역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은 어느 한 부처에서 밀고 나가기에는 너무 관련부처가 많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를 수용하는데서 출발,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적어도 10년 또는 1백년후에도 후회되지 않는 주택건설이 되길 바란다.